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988호 2017. 9. 29.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100호 삼척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3
- 삼척시 조례 제1101호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삼척시 조례 제1102호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삼척시 조례 제1103호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삼척시 조례 제1104호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 삼척시 조례 제1105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 삼척시 조례 제1106호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삼척시 조례 제1107호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22
- 삼척시 조례 제1108호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24
- 삼척시 조례 제1109호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70
- 삼척시 조례 제1110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72

훈 령

- 삼척시 훈령 제275호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 75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10호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고시 ----- 103
- 삼척시 고시 제111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고시 ----- 106
- 삼척시 고시 제11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10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77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13

공 람									
--------	--	--	--	--	--	--	--	--	--

제19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4.)에서 의결된 삼척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7년 9월 29일

삼척시 조례 제1100호

삼척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인재발굴과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만듦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일반적 생활권역인 통·리·반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 읍·면을 포함하는 삼척시 전체 공간적 범위를 총칭한다.
2.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의 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모든 과정의 활동을 말한다.
4.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이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인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사업을 추구하고 다양한 현안문제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간 신뢰와 규범 등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3.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특성과 자원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4. 지역공동체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책무)

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동체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제2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책방향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공동체 운영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재 육성과 국내외 현장학습 등 교육사업 지원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사업
3.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4.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5.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7. 지역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 8. 그밖에 지역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공동체 발굴·육성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삼척시 산하조직 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지역공동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설치)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지역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 심의·자문·평가에 관한 사항
- 2.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3. 관련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지역공동체 대표 및 일반주민 3명 이내
 - 2. 지역공동체 관련 전문가 4명 이내
 - 3. 지역공동체 관련 시 공무원 3명 이내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직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삼척시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시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지역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사업 분석·평가·연구
- 3. 지역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 4. 지역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 5.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6. 자원조사·발굴·분석·연구 및 사업화
- 7. 공동체 발굴·육성 공모사업 선정·집행·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 8.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현장포럼 지원

- 9.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 10.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 11.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관리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9조(포상) 지역공동체사업에 기여한 우수 마을 및 단체, 기관, 리더 및 공무원 등에게 「삼척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4.)에서 의결된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김양호

2017년 9월 29일

삼척시 조례 제1101호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13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의 해지
 2.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의 해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 ⑥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폐기물협회 등 전문 평가기관에 대행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⑤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 결과 부진한 대행업체를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3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원가계산 사항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4(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제17조제2항”을 “제28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58조제2항”을 “법 제62조제3항”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4.)에서 의결된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7년 9월 29일

삼척시 조례 제1102호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삼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삼척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삼척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삼척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민관 협력기구인 “삼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와 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 단체에 대한 업무의 위탁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경제의 성장·사회의 안정·환경의 보전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청정삼척 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삼척의제21을 수립하고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지원하여야”를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의제21”을 “삼척의제21”로, “하며”를 “하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의제21”을 “삼척의제21”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청정삼척21”을 각각 “삼척의제21”로, 같은 호 중 “조사·연구사업”을 “조사·연구 및 대안제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업”을 “민간단체,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제21”을 “삼척의제21”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본 협의회 회장단은 2인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의 민간협의회장을 두며 민간협의회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협의회의 운영”을 삭제한다.

제10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및 회의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앞에 “제4장 협의회의 운영”을 삽입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안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의 10일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 “(기타)”를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재정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5장 재정지원 등”을 삽입한다.

제18조(중전의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에 따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6조) 제2호 중 “지방의제21”을 “삼척의제21”로 하며, 같은 조(중전의 제16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8조) 중 “환경정책을”을 “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정책을”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①협의회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전문성, 책임성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협의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23조(중전의 제20조) 중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4.)에서 의결된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김양호

2017년 9월 29일

삼척시 조례 제1103호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유료 관광지 3개소 이상”을 “유료 및 무료 관광지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료 관광지 2개소 이상”을 “유료 및 무료 관광지 일부”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시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조달등록 교육여행상품, 철도여행객 유치 관광상품, 자치단체 간 상생협약에 의한 관광상품)

제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 2.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관광 홍보물 또는 기념품 제공
 - 3. 시의 유료 관광시설 이용요금 일부 할인
 - 4. 일정 규모 이상 단체관광객의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 5.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6. 시 주관 팸투어 참여자 여비, 관광지 요금 감면 등 지원
 - 7.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 8. 그 밖에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제4조 제3항(중건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내지 제2항”으로 한다.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제2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이하“해설사”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 ②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3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제11조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따라 활동여건,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해설사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 2. 해설활동 추진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
 - 3. 해설사 활용에 필요한 공동 근무복
 - 4. 국내·외 선진 비교시찰 활동경비
 - 5. 전국·도 단위 행사참가 여비
 - 6. 정기 보수교육 등 그 밖에 해설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3호 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

- 1. 관광진흥 각종 시책 및 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
- 2. 제1호의 사업대상지 주민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4.)에서 의결된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김양호

2017년 9월 29일

삼척시 조례 제1104호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금고를 지정하여”를 “삼척시 지정금고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마목”을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연재난업무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자연재난업무 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4.)에서 의결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7년 9월 29일

삼척시 조례 제1105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캠퍼스시설 시설개선 및 유지
- 5. 그 밖에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제5조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사업

제6조제3항 중 “캠퍼스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지역대표자 4명”을 “지역대표자 7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4.)에서 의결된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7년 9월 29일

삼척시 조례 제1106호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및 자체행사”를 “행사와 농업인 자체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기업형 새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농업최고경영자 해외연수”를 “농업경영체 해외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 중 “축사 환경개선에 관”을 “축사환경 개선,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축사지붕”을 “축사·농업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콩 선별료지원”을 “건조료, 콩 선별료, 공공비축 미곡매입에 따른 상하차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친환경인증 장려금, 녹비·사료작물 종자 및 벼 육묘지원, 농업용장비 조종교육

제8조제10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7.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설치 및 운영, 임차료지원 등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제8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를 입은”을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부”를 각각 “일부 또는 전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경영체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각종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부

제8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4.)에서 의결된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김양호

2017년 9월 29일

삼척시 조례 제1107호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삼척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방재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나, 동 지역 중 산림이 있고, 해당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산불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자율방범대다. 리·통장
 - 라. 그 밖에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인 단체로써,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

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및 산불중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활동
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보상금의 지원)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지급액·지급조건·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4.)에서 의결된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김양호

2017년 9월 29일

삼척시 조례 제1108호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고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삼척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

- 산대장으로 같음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같음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제6조(전자계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계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계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 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계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계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 등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계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계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 불구하고 지주이용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 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전광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옥외광고물 사전검토 등)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영 제2장에서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을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 2.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의 사전협의 후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 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

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시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 시설관리공단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1. 사무실
-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 계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 시장은 지정계시시설의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 2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과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⑦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까지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⑧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 3. 위반 장소 및 위치
 -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의 2서식에 따른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2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 2. 교육 대상자
-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과 영 제49조제1항제2호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종업원 포함)은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 옥외 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 1. 과오납한 경우

-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와 옥외 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계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비서류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식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삼척시 재증량 등 수수료 징수조에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계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속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삼 척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9조
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
명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제37조 및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성명

직위(직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2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	--

교육 수료일자	
---------	--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7조제1항 관련)

위 치		설치광고물				비고
주 소	이격거리	종류	수량	규격(m) (가로×세로)	전체 높이 (m)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 동지역	이행강제금 ※ 읍면지역
가. 벽면이용 간판 및 공면간판		
1) 면적 5㎡미만		
- 2㎡ 미만	20만원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2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30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40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50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60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70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80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90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10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12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5만원	14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5만원	16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180만원
4) 면적 20㎡	200만원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2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3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40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50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60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70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80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90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10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12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14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16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180만원
4) 면적 20㎡	200만원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에드빌론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30만원	30만원
- 0.5㎡ 이상 1㎡ 미만	35만원	33만원
- 1㎡ 이상 2㎡ 미만	40만원	38만원
- 2㎡ 이상 3㎡ 미만	48만원	45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55만원	50만원
- 3.5㎡ 이상 4㎡ 미만	65만원	60만원
- 4㎡ 이상 4.5㎡ 미만	80만원	80만원
- 4.5㎡ 이상 5㎡ 미만	95만원	90만원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0㎡ 이하	110만원	10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0만원	12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0만원	14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0만원	16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0만원	180만원
4) 면적 10㎡	200만원	20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에드빌론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30만원	30만원
- 2㎡ 이상 3㎡ 미만	35만원	33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38만원
- 4㎡ 이상 5㎡ 미만	48만원	45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55만원	50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60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70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80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90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10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12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14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16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180만원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210만원	200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5만원	240만원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250만원
- 40㎡ 이상 45㎡ 미만	280만원	26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90만원	280만원
5) 면적 50㎡	300만원	300만원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에드빌론

-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30만원	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4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5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60만원
- 면적 20㎡	75만원	65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에드빌론		
- 에드빌론(공) 1개	30만원	30만원
- 에드빌론(공) 2개	60만원	50만원
- 에드빌론(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에드빌론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에드빌론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30만원	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4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5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60만원
- 면적 20㎡	80만원	7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5만원을 더한 금액
2) 교통안내소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의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150만원	150만원
- 면적 10㎡	160만원	16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10만원	10만원
- 1㎡ 이상 2㎡ 미만	20만원	20만원
- 2㎡ 이상 3㎡ 미만	29만원	29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35만원	35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45만원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결렬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마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4]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 등지역	수수료 ※ 읍면지역
가. 벽면 이용 간판		
1) 차사광고		
- 면적 5㎡ 이하	3,000원	2,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30,000원	2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15,000원	1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5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류기관·약국 표지등(개당)	8,000원	6,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35,000원	30,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15,000원	12,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2,000원

바. 애드빌튼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 는 금액	3,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4,500원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 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 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다.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 액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7,000원 1,500원	5,000원 1,000원
파. 벽보(1건)	3,000원	2,500원
하. 전단(500매마다)	3,000원	2,500원
기. 전자게시대(1건)	3,000원	3,000원
너. 내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내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5]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18,000원
	- 면적 5㎡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18,000원
	- 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27,000원
	- 면적 50㎡ 초과 70㎡ 이하	49,000원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18,000원
	- 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마. 에드빌튼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등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점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6]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동지역	과태료 ※읍면지역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13만원	12만원
- 0.5㎡ 이상 0.8㎡ 미만		22만원	17만원
- 0.8㎡ 이상 1㎡ 미만		32만원	25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42만원	33만원
- 1.3㎡ 이상 1.6㎡ 미만		50만원	42만원
- 1.6㎡ 이상 2㎡ 미만		64만원	58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75만원	67만원
- 2.3㎡ 이상 2.6㎡ 미만		100만원	92만원
- 2.6㎡ 이상 3.0㎡ 미만		129만원	117만원
라) 면적 3㎡		130만원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8만원	7만원
- 0.5㎡ 이상 0.8㎡ 미만		12만원	10만원
- 0.8㎡ 이상 1㎡ 미만		14만원	13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25만원	17만원
- 1.3㎡ 이상 1.6㎡ 미만		33만원	25만원
- 1.6㎡ 이상 2㎡ 미만		49만원	42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58만원	50만원
- 2.3㎡ 이상 2.6㎡ 미만	67만원	58만원
- 2.6㎡ 이상 3.0㎡ 미만	79만원	75만원
라) 면적 3㎡	80만원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8만원	8만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12만원
- 2㎡ 이상 3㎡ 미만	14만원	1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22만원	17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22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25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33만원
- 6.1㎡ 이상 8.0㎡ 이하	58만원	50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5만원	58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장당 22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83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16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30만원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50만원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제19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4.)에서 의결된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7년 9월 29일

삼척시 조례 제1109호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삼척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로, “삼척시옥외광고정비기금”을 “삼척시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삼척시옥외광고정비기금”을 “삼척시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7.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2인”을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삼척시 의회”를 “삼척시의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80일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 9. 14.)에서 의결된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7년 9월 29일

삼척시 조례 제1110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통·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3. “지원사업”이라 함은 소득기반시설 등 지역개발사업,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보조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 2.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상 영향
-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 3. 주택정비·보수, 도색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
- 4. 방류수역(해역) 생태보전사업
- 5.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 6.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 7.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신·개축 및 집기류 구입
- 8. 그 밖에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등

제6조(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과 설치 부지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배제) 환경기초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9월 22일

삼척시장 김양호

삼척시 훈령 제275호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이하 “도계유리나라”라 한다)의 작품 수집·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장품수집 계획수립 및 대상)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내·외 창작미술작품으로 한다.

제3조(수집방법 등) 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 기증, 관리전환, 공모, 예술품 디자인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② 수집 대상 작품은 도계유리나라 작품수집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작품을 도계유리나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조의(경매구입) ① 경매를 통하여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한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수집 작품 제안권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예정 작품을 직접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위원회는 응찰예정 작품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하여 응찰 여부와 응찰시 최고 응찰가격을 결정한다.
4. 작품수집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은 낙찰된 작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구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경매에 참여한 공무원은 경매 작품구입 후 최초로 개최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경매 참여 사실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 작품의 제안)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제2조에 따른 소장 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구입할 미술 작품을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안권자는 추천위원회 위원들로 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수집 작품 제안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안권자가 수집 작품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 충분한 조사·연구와 현장조사 등에 기초한 수집 작품 제안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서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서가 접수되면 작품추천과 관련된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 작품 목록에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추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6조(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소장 작품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서장이 된다.

- 1. 부시장
- 2. 작품수집 업무담당 부서장
- 3. 시장이 위촉한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1. 본인이 원하는 때
-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계유리나라 운영담당으로 한다.

제7조(추천위원회 회의) ① 추천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해당 연도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연중 균형있게 분산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추천위원회의 작품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의 작품성, 가격 및 소장 필요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작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작품으로 확정된 작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집추천 작품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수집추천서와 그 밖에 필요한 관계자료(도판, 사진, 작가 약력, 작품기증의향서 등)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작품수집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6개 부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유리
- 2. 조각

- 3. 디자인
- 4. 공예
- 5. 미술평론가
- 6. 화랑 대표

③ 위원은 부문별로 덕망 있고 권위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1. 본인이 원하는 때
-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계유리나라 운영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임무)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수집대상 작품의 수집 여부
- 2. 구입·기증 및 관리전환, 디자인 등록(공모) 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 3. 작품의 불용결정
- 4. 그 밖에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추천작품의 추천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추천위원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작품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실 및 작품수집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5

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때를 제외하고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⑥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작품 중 수집이 필요하다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작품에 한정하여 별도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가격평가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대상 작품을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가격 및 구입여부를 평가하되, 구입가격은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 결정서에 작성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가격을 필요한 경우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감정평가 등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의 추천된 작품 중에서 수집결정을 하되, 채점제와 가부제를 병행하여 결정한다.

제13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집절차)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한 작품의 계약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작품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매계약 체결 전에 작품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작품의 구입이 취소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구입 취소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취소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작품수집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수집 의결된 작품을 관련규정에 따라 재무관에게 구입을 요구하거나 기증 또는 관리전환 등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반 조치가 완료된 작품은 작품수집 담당부서장이 검수 후 영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작품수집 담당부서장은 작품 검수 과정에서 하자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하자 등의 보고가 있는 작품은 정밀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수집을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작품수집업무관련자 업무지침) ① 작품수집업무에 관련된 자는 작품수집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1의 작품수집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품수집업무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추천위원회 위원
- 2. 심의위원회 위원
- 3. 그 밖에 작품수집업무 관련 공무원

제16조(소장 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시장은 소장 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 작품 담당부서장을 소장 작품 관리관으로, 소장 작품 주무담당을 소장 작품 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② 소장 작품 관리관은 소장 작품의 관리·수리·복원·복제·출납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 작품 출납공무원은 소장 작품 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④ 소장 작품의 관리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소장 작품의 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장 작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 작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을 소장 작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라서 구입한 작품
- 2. 각종 전시회의 수상작품으로써 도계유리나라에 기증된 작품
- 3.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작가의 기증된 작품
- 4. 그 밖에 시장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작품

④ 소장작품 관리관은 소장 작품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장품등록 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작품대여의 대상 및 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 3. 작품을 도계유리나라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장 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 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대여 받은 자의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 허가를 받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여 작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2. 작품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3. 대여 기간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대여 작품을 복제(사진 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대여 받은 사람은 도계유리나라에서 정하는 작품 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대여조건 및 대여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20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① 대여 받은 사람이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은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시장은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즉시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탁 작품) ① 도계유리나라는 전시 등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작품을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탁대상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유리(목공예) 또는 전시운용에 필요한 작품
- 2. 예술성, 창작성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기증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작품

③ 기탁 작품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대여료를 기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탁 작품의 관리 사항은 소장 작품 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기탁방법) 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사람(개인 및 단체포함)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미술작품 기탁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 작품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탁 작품의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 작품의 반환신청을 할 때는 기탁 작품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품기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상속인이 기탁 작품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탁기간의 연장) ① 기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미술연구와 상설 및 기획전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 2. 장기적으로 도계유리나라 소장 작품으로 수집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기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탁자의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기탁기간은 반환신청이 있는 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작품기증)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작품의 불용결정 등)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는 그 작품을 불용결정할 수 있다.

- ②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 시장이 불용 결정한 작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작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 관람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작품수집업무지침

- 1.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은 삼척시의 해당 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숙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작품을 추천하여야 한다.
- 2. 추천위원은 수집작품 추천 시 작품성, 시장가격, 진위여부, 작품이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3. 추천위원은 구입작품의 추천 시 사업자, 미술관 또는 작가가 판매자인 작품을 일반 개인 판매자의 작품인 것으로 제안·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추천위원은 추천할 작품의 소장자에게 미술관의 작품 수집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어떤 형태로도, 수집의 가부를 미리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은 수집대상 작품의 수집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 6. 심의위원은 본인의 작품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7. 작품수집 업무 관련자는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8. 작품수집 업무 관련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경우에도 시장의 최종 수집결정 이전에 심의결과 및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3호 서식]

수집추천작품목록

순번	부문	작가명	명제	제작 년도	규격 (cm)	재료 및 기법	제안자	작품 출처	시장 가격 (천원)	구입 추천가 (천원)	추천위원회의 결과 (가·부)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제1면)

작품수집추천서

작품수집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추천인 : (인)

부 문	<input type="checkbox"/> 유리공예 <input type="checkbox"/> 유리조형 <input type="checkbox"/> 목재공예 <input type="checkbox"/> 목재조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작 가	한 글		호 (한글)		
	한 자		호 (한자)		
	영 문		최종학력		
	국 적		생졸년도		-
	주 소	(- -)			
전 화	(- -)	휴대폰			
택 스	(- -)	이메일		@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년도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X 가로	cm	(액자 포함 X cm)
	입체 높이	X 폭	X 길이	cm	kg
소장자 <small>(판매자 혹은 기증자)</small>	성 명	* 작가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유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생년월일				
	주 소	(- -)			
	전 화	(- -)	휴대폰		
	택 스	(- -)	이메일		@
가 격	시장가격 (천원/\$)		구입추천 가 격 (천원)		
	산출근거 :				
부대비용	운송비	<input type="checkbox"/>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input type="checkbox"/> 발송자부담		보 험	<input type="checkbox"/>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input type="checkbox"/> 발송자부담

추천위원회는 상기의 작품을 수집(구입/기증)할 것을 추천합니다.

20 . . .

작품수집추천위원회위원장

○ ○ ○ (인)

(계2면)

추천 작품 자료

1. 작품내역

부 문	<input type="checkbox"/> 유리공예 <input type="checkbox"/> 유리조형 <input type="checkbox"/> 목재공예 <input type="checkbox"/> 목재조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작 가	한 글	호 (한글)	
	한 자	호 (한자)	
	영 문	최종학력	
	국 적	생존년도	-
	주 소	[☎ -]	
	전 화	()	휴대폰
팩 스	()	이메일	@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년도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X 가로 cm (역자 포함 X cm)	입체 높이 X 폭 X 길이 cm kg

2.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위 치	<input type="checkbox"/> 작품상단 좌/우 <input type="checkbox"/> 작품하단 좌/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 료	평 면	<input type="checkbox"/> 유리 <input type="checkbox"/> 목재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 체	<input type="checkbox"/> 유리 <input type="checkbox"/> 목재 <input type="checkbox"/> 동합금(청동/황동) <input type="checkbox"/> 철 <input type="checkbox"/> 돌 <input type="checkbox"/> 합성수지 <input type="checkbox"/> 은 <input type="checkbox"/> 도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 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훼손 내용: · 수목이력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내용: 수목일자: . . .	

3. 작품소장경력

번호	소장지명	소장년도	소 장 방 법	연 락 처			
1			<input type="checkbox"/> 기증 <input type="checkbox"/> 유증 <input type="checkbox"/> 구입 (가각:) <input type="checkbox"/> 교환 <input type="checkbox"/> 관리전환	주 소	[☎ -]		
				전 화	()	휴대폰	
				팩 스	()	이메일	@
2			<input type="checkbox"/> 기증 <input type="checkbox"/> 유증 <input type="checkbox"/> 구입 (가각:) <input type="checkbox"/> 교환 <input type="checkbox"/> 관리전환	주 소	[☎ -]		
				전 화	()	휴대폰	
				팩 스	()	이메일	@

4. 작품관련 도서, 논문, 기타 출판물

저지명	서 적 명	출판사	발행년도	페이지	출판지

5. 본 작품의 전시경력 및 수상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6. 추천사유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의의, 미술관에서 차지할 역할 및 비중)

* 글자크기 : 10 포인트

※ 작품사진, 작가자료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삼척시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실과 입기 중 작품수집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 (인)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작품 수집(구입·기증·관리·전환)결정 평가표

심의위원 : (인)

<div style="text-align: center;"><수집대상작품 현황></div>							
작품명							작품사진
부문							
작가명							
수량							
규격							
제작년도							
소 유 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시장가격(천원)							
구입추천가격(천원)							
<div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역></div>							
평가가격 (천원)	채점기준(100점)						구입여부 (O,X)
	작품성 (30점)	창의성 (20점)	예술성 (20점)	미술사 적가치 (20점)	보존 상태 (10점)	계	

※ 채점기준 70점 이상 = 구입 적정(O),
채점기준 70점 미만 = 구입 부적정(X)

작품수집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1면)

소장품 관리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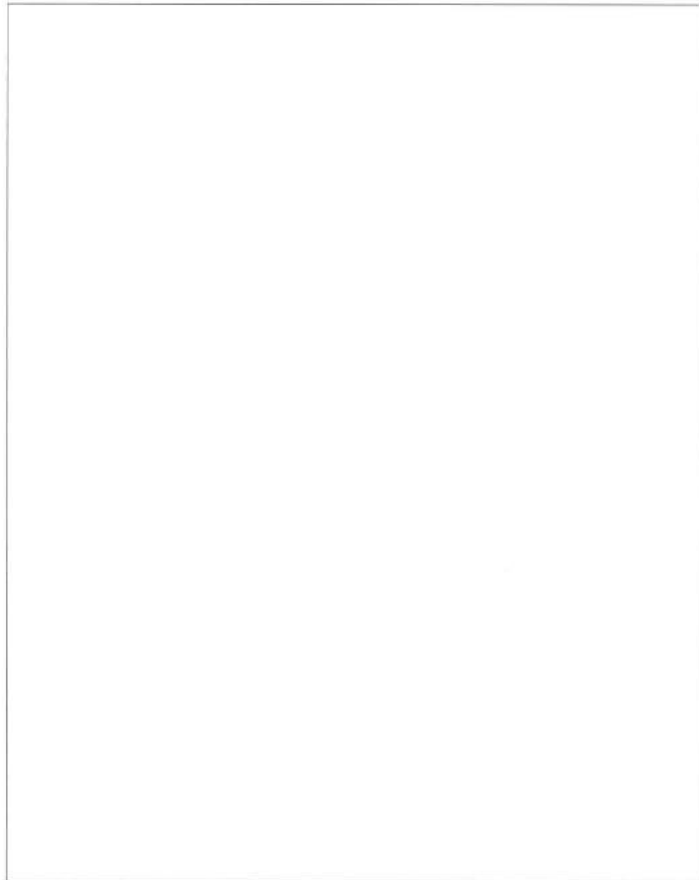
작품번호 :	현재위치 :
<작품사진>	
작가명 :	출생년도 :
국적 :	사망년도 :
명제 :	부문 :
작품유형 :	제작년도 :
재료 및 기법 :	표기사항 :
에디션 번호 :	규격 :
양식(시대/유파/사조)	취득일시 :
취득방법 - 구입() 기증() 관리전환()	취득가격(원) - 구입가 : - 평가액 : - 감정가 :

(제2면)

소장경력	전시이력
상태조사이력	
작품설명	
관련문헌	
관련시각자료 사진 (), 슬라이드 (), video tape (), 도판용 필름 () CD-ROM (), 포스터 (), 엽서 (), 기타 ()	
비고	
작성일시 :	작성자

(제2면)

대여 작품 사진



[별지 제12호 서식]

기탁 작품 보관증

1. 기탁자

1. 주소 :

전화 :

1. 생년월일 :

1. 성명 :

2. 수탁자 :

3. 기탁기간 :

4. 기탁조건 :

5. 기탁작품내역

작품명	규격	제작년도	비고

위와 같이 기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삼척시장

삼척시 고시 제2017 - 110호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고시

경기도 안중 ~ 강원도 삼척간 동서고속도로(동서 6축) 경유 인접 시·군은 상호교류 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관심사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구성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의 규약을 같은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삼척시장

붙임 :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1부.

「붙임 1」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경기도 안중 ~ 강원도 삼척간 동서고속도로(동서 6축) 경유 인접 시·군은 상호교류 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관심사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동서고속도로 추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자치단체간 공동관심사인 동서고속도로의 조속추진 및 공동협력 방안
2. 시·군정 각 분야별 시책의 공조
3. 기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으로 구성한다.

② 동서(6축)고속도로 경유 시·군의 협의회 참여 요청 시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4조(운영) ① 협의회 회원은 평택시장, 안성시장, 동해시장, 태백시장, 삼척시장, 영월군수, 정선군수, 충주시장, 제천시장, 진천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로 하고 회장은 윤번제로 호선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사무를 총괄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고시는 차기 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가 대리 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하반기 중 개최한다.
- ③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6조(사무처리) 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 1인과 간사 2인을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은 각 시군의 기획부서 또는 도로관리 부서장으로 간사는 기획팀장(기획담당), 도로팀장(도로담당)으로 한다.
- ③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 및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실무위원으로 한다.
-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본 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 등 의결·활동 사항을 작성 관리한다.

제9조(협의사항 처리 등)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경비는 회의주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 경비를 분담할 경우에는 상호간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규약개정) 이 규약은 협의회 회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본 규약 이외에 사항은 협의회의 합의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약은 2015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약은 2015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약은 2015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약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고시

삼척시 고시 제(2017-111)호

공강연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삼척시 장

기준점 명칭	기준점 번호	지적표지 종류	지적표지 성과		세계표지 성과		표고	경위도 (GCS80 타원체 기준)		토지소재지	설치 년월일	표지개질 연월일	측량상 표준점소 속	비고
			X	Y	X	Y		위도	경도					
지적도근점	3496	동부원점	410309.78	230086.89	510617.85	230142.90	3.523	37 11 39.0777	129 20 22.2165	삼척시 원덕면 노곡리 535-3번지	20170621	활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도근점	3497	동부원점	410363.77	230130.97	510671.84	230184.97	2.502	37 11 40.8241	129 20 21.9304	해수면 신규통측지	20170621	활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도근점	3498	동부원점	410403.17	230302.81	510711.23	230357.81	10.122	37 11 42.0823	129 20 30.9441	해수면 신규통측지	20170621	표적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도근점	3499	동부원점	410413.26	230437.42	510721.35	230491.41	9.962	37 11 42.3942	129 20 36.3631	해수면 신규통측지	20170621	표적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도근점	3500	동부원점	410386.87	230557.19	510645.06	230611.19	9.811	37 11 39.9854	129 20 41.2083	해수면 신규통측지	20170621	활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도근점	3501	동부원점	410441.22	230570.24	510449.31	230634.25	9.740	37 11 33.5543	129 20 41.7089	해수면 신규통측지	20170621	활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도근점	3502	동부원점	410129.35	230335.51	510437.63	230393.52	9.965	37 11 33.2026	129 20 32.3522	해수면 신규통측지	20170621	활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도근점	3503	동부원점	410115.04	230120.00	510423.11	230174.01	10.523	37 11 32.7572	129 20 23.4499	해수면 신규통측지	20170621	표적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도근점	3504	동부원점	409643.16	230064.39	509951.23	230118.42	39.836	37 11 17.4571	129 20 21.1275	해수면 신규통측지	20170621	활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도근점	3505	동부원점	409662.13	230370.86	509970.61	230424.89	9.824	37 11 18.0501	129 20 33.5556	해수면 신규통측지	20170621	활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도근점	3506	동부원점	409698.63	230354.90	510206.71	230408.92	9.829	37 11 25.7103	129 20 32.9429	해수면 신규통측지	20170621	활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도근점	3507	동부원점	409971.90	230581.73	510280.00	230635.75	9.695	37 11 28.0610	129 20 42.1501	해수면 신규통측지	20170621	활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기준월 명칭	기준월 번호	기준월 명칭	지자체간계 영원명	지역번호 성과		세계화도 성과		보고	경위도 (GRS80 타형제 기준)		토지 소재지	심지 단일일	표지제결	측량신과 보관장소	비고
				X	Y	X	Y		위도	경도					
지역도근결	3508	동부원결	409703.63	230599.73	510011.73	230653.75	9.872	37 11 19.3569	129 20 42.9407	해수면 인근동축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09	동부원결	409420.85	230618.86	509728.95	230672.90	9.867	37 11 10.1821	129 20 43.3751	해수면 인근동축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10	동부원결	409207.69	230633.21	509515.80	230687.26	9.875	37 11 09.3661	129 20 44.1259	해수면 인근동축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11	동부원결	409071.05	230642.51	509379.15	230666.57	9.893	37 10 58.8927	129 20 44.6832	해수면 인근동축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12	동부원결	408868.41	230714.39	509236.52	230775.45	9.862	37 10 56.4431	129 20 47.6687	해수면 인근동축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13	동부원결	408866.25	230774.14	509019.66	230782.50	5.829	37 10 47.1616	129 20 47.3134	해수면 인근동축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14	동부원결	408800.14	230800.06	508894.37	230828.22	5.914	37 10 48.0920	129 20 48.3483	해수면 인근동축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15	동부원결	408830.19	230874.08	508688.26	230854.16	6.012	37 10 36.4395	129 20 45.6621	해수면 인근동축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16	동부원결	408852.02	230850.88	508660.13	230664.98	6.062	37 10 35.5109	129 20 43.9068	해수면 인근동축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17	동부원결	408845.34	230831.40	508653.44	230855.50	6.025	37 10 35.1057	129 20 38.0732	해수면 인근동축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18	동부원결	408332.38	230841.61	508640.47	230895.71	6.091	37 10 34.9073	129 20 32.1779	해수면 인근동축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19	동부원결	408425.50	230299.16	508733.59	230793.25	12.080	37 10 37.0397	129 20 28.0381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38-15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20	동부원결	408521.29	230023.56	508829.36	230077.65	74.953	37 10 41.0714	129 20 21.5249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21번지	20170621	표적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21	동부원결	408377.98	230078.65	508686.05	230132.75	78.227	37 10 36.1654	129 20 22.6765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2-2번지	20170621	표적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22	동부원결	408582.25	230106.42	508677.33	230160.51	29.803	37 10 42.2934	129 20 22.6765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2-2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23	동부원결	408807.56	230005.06	508996.02	230659.14	39.883	37 10 46.9796	129 20 18.3958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25-9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24	동부원결	408800.21	229940.05	509188.27	229964.13	52.606	37 10 52.7232	129 20 15.9779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23-7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26	동부원결	408802.87	229895.98	509190.33	229950.06	70.275	37 10 52.8646	129 20 14.1918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23-4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27	동부원결	408701.55	229903.57	509009.62	229863.66	75.153	37 10 46.9317	129 20 14.7169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24-4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기준월 명칭	기준월 번호	기준월 명칭	지역번호 성과		세계화도 성과		보고	경위도 (GRS80 타형제 기준)		토지 소재지	심지 단일일	표지제결	측량신과 보관장소	비고
			X	Y	X	Y		위도	경도					
지역도근결	3528	동부원결	408621.33	229896.20	509029.40	229940.29	67.943	37 10 44.3310	129 20 14.1034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21-4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29	동부원결	408519.71	229782.74	508827.78	229837.84	44.286	37 10 41.0476	129 20 09.5901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20-4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30	동부원결	409400.33	229844.30	508788.40	229898.39	39.439	37 10 39.1633	129 20 12.0394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19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31	동부원결	409483.33	229952.48	508791.40	230006.57	38.708	37 10 39.6183	129 20 16.4251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17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32	동부원결	409424.46	229897.77	508732.53	229951.86	30.351	37 10 37.9449	129 20 14.1989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17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33	동부원결	408300.04	229855.65	508688.10	229913.75	20.153	37 10 36.5083	129 20 12.6475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17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34	동부원결	408319.97	229906.92	508628.04	229961.02	14.453	37 10 34.5546	129 20 14.5550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17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35	동부원결	409079.45	229825.96	509387.51	229980.03	69.856	37 10 59.1876	129 20 15.4850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06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36	동부원결	409074.19	229789.39	509382.25	229843.46	69.996	37 10 59.0326	129 20 09.8977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27-4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37	동부원결	409390.68	229770.32	509688.73	229824.37	69.944	37 11 09.3308	129 20 09.1693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29번지	20170621	표적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38	동부원결	409402.95	229845.79	509711.01	229897.84	68.886	37 11 09.6995	129 20 12.1096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29번지	20170621	표적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39	동부원결	409240.87	229969.85	509548.93	229963.91	70.031	37 11 04.4256	129 20 14.8048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4-2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40	동부원결	409481.86	229895.58	509789.92	229947.62	70.032	37 11 12.2445	129 20 14.1794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4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41	동부원결	409625.62	229900.20	509933.68	229954.24	70.356	37 11 16.9007	129 20 14.4683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29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42	동부원결	409625.68	229824.50	509933.74	229878.94	70.013	37 11 16.9175	129 20 11.9993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31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43	동부원결	409827.88	229816.29	510135.93	229870.32	92.818	37 11 23.4772	129 20 11.0590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31번지	20170621	표적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44	동부원결	409994.26	229783.63	510302.31	229837.65	113.766	37 11 28.8776	129 20 09.7946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13번지	20170621	황동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45	동부원결	410260.30	229827.96	510568.34	229881.96	120.788	37 11 37.5021	129 20 11.6295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244번지	20170621	표적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46	동부원결	409216.24	229957.70	509524.29	229711.76	70.210	37 11 03.6553	129 20 04.5787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신34번지	20170621	표적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역도근결	3547	동부원결	409758.52	229615.73	510066.56	229669.77	118.625	37 11 21.2500	129 20 02.9539	삼척시 원덕읍 옥림리 신8-13번지	20170621	표적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기준일 명칭	기준면 번호	기준지 명칭	지역대표 성과		세계대표 성과		포고	경원도 (US9500 단위제 기준)		소재지	신기 명칭	표시제 구분	작성일과 보관장소	비고
			X	Y	X	Y		위도	경도					
지력도면명	3548	동부원정	41022324	22969783	51043139	22974184	112.518	37 11 33.0756	129 20 05.9285	삼척시 문막읍 옥동리 산13번지	20170621	표식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력도면명	3549	동부원정	40997109	22974158	51027914	22979560	94.042	37 11 28.1310	129 20 08.0863	삼척시 문막읍 옥동리 산13번지	20170621	황봉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력도면명	3550	동부원정	41016165	22973989	51046970	22979390	83.810	37 11 34.3124	129 20 08.0446	삼척시 문막읍 옥동리 산13번지	20170621	황봉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력도면명	3551	동부원정	40943258	23152855	50974072	23188359	6.698	37 11 10.4547	129 21 20.4984	해수면 봉파재	20170621	황봉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력도면명	3552	동부원정	40977859	23163718	50948674	23169123	6.652	37 11 02.2031	129 21 24.4237	해수면 봉파재	20170621	황봉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력도면명	3553	동부원정	23174079	50924618	50924618	23179485	6.709	37 10 54.3870	129 21 28.9880	해수면 봉파재	20170621	황봉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력도면명	3554	동부원정	40872167	23183321	50902984	23188728	6.692	37 10 47.3684	129 21 32.7017	해수면 봉파재	20170621	황봉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삼척시 고시 제2017 - 11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 09. 29.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박결남로 202-167 외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9.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여삼리 4-1, 5, 5-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박걸남로 202-167	20170929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박걸남)이름활용(문화재명칭)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612-1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323	20170929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 도로명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761-22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27-64 (교동)	20170929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지역도로 구간내주요시설(청솔,석미아파트)활용도로명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4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9-10	2017092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5		이	하	여	백		
6							
7							
8							
9							
10							
11							
12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4건	계	4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여삼리 4-1, 5, 5-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박걸남로 202-167	20170929	20170929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박걸남)이름활용(문화재명칭)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612-1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323	20170929	20170929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 도로명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761-22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27-64 (교동)	20170929	20170929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지역도로 구간내주요시설(청솔,석미아파트)활용도로명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4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9-10	20170929	2017092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